

금융혁신 추진방향

2018. 1. 15.

금 융 위 원 회

목 차

I. 추진 배경	1
II. 금융혁신 추진전략 및 주요과제	2
1. 금융부문 쇄신 → 금융 신뢰회복	3
2. 생산적 금융 → 혁신성장 지원	6
3. 포용적 금융 → 서민·소비자 보호강화	9
4. 경쟁촉진 → 국민 금융편익 제고	11
III. 향후계획	14

I. 추진배경

- 금융당국·금융회사 등 금융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크게 저하*되면서,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에 한계
 - * 저축은행 사태 등 금융사고, 금융행정의 일관성·투명성·신속성 부족, 금융회사의 불공정한 영업관행·폐쇄적 지배구조 등이 금융신뢰를 훼손
 - 금융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신뢰가 중요하나, 그간 서민지원·소비자보호에 있어 국민적 기대 수준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
 - * 서민·중소기업·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소극적 자금공급, 약탈적대출 등 불완전판매,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연체자에 대한 적극적 추심 등
 - 또한, 자본시장·벤처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도 여전히 미흡
 - * 금융은 담보·보증 위주의 영업을 지속 → 기업금융 보다 가계대출에 치중
 -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코스닥 시장(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엔진)의 기능이 점점 약화
 - * '09년 이후 나스닥은 약 3배 상승한 반면, 코스닥 지수는 '96년 출범 당시보다도 20% 낮은 상황
 -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특화 금융사업자의 출현이 지연되면서, 시장내 경쟁과 혁신이 부족
 - * 금융업 신규인가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기존 금융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지대(地代)를 향유한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
- ⇒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는데 금융이 적극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 금융당국·금융회사·시장 등 금융 전반에 걸쳐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금융혁신」 추진이 필요

II. 금융혁신 추진전략 및 주요과제

◆ 4대 전략(금융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경쟁 촉진) 하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을 일관되게 추진

※ 11개 분야·30대 핵심과제로 구성

➔ 금융혁신을 통해 금융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적극 구현

금융혁신 추진전략 및 주요과제

현황 및 문제점	금융혁신 추진전략
금융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	1 금융부문 쇄신 → 금융 신뢰회복 ① 금융당국 혁신 :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행정 추진 ② 금융업권 쇄신 : 채용비리 등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하게 쇄신 ③ 금융분야 경제민주주의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 미흡	2 생산적 금융 → 혁신성장 지원 ④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 기업 성장단계별 금융의 역할 강화 ⑤ 금융 본연의 기능 강화 :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중개 확대
서민지원·소비자보호 강화 필요성 증대	3 포용적 금융 → 서민·소비자 보호 강화 ⑥ 서민·취약처주 지원 : 서민의 지름이로 해소 및 금융부담 완화 ⑦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소비자 중심으로 금융제도 정비 ⑧ 사회적금융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금융시장 내 건전한 경쟁 부족	4 경쟁촉진 → 국민 금융편익 제고 ⑨ 인가 개편 : 금융분야 내 새로운 혁신 도전자 출현 촉진 ⑩ 핀테크 활성화 : 혁신적 금융서비스 출시 유도 ⑪ 금융규제 혁신 :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및 외연 확대 지원

1. 금융부문 쇠신 → 금융 신뢰회복

◆ 최우선적으로 당국, 금융회사, 시장 등 금융 전반에 걸친 쇠신 노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

- 당국부터 우선 혁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권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을 추진

(1) 금융당국 혁신 :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행정 추진

□ (당국부터 변화) 금융행정혁신위 권고('17.12.20.) 등을 감안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금융당국 혁신'을 차질없이 추진

- 권고안에 대한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1월)하여 충실히 관리·이행
 - * 권고사항(73개)을 최대한 수용하여 금융위 안전·의사록 공개, 불공정영업에 대한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에 대해 조속히 이행방안 마련
 - * 혁신위 권고내용 중 당장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안들은 혁신위 위원과 긴밀히 협의하고 관련부처 의견 등을 감안하여 방안을 검토·마련

< 혁신위 권고내용 >

- ① (차명계좌) 국회 등의 논의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검토 필요
- ② (은산분리) 국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규제완화의 득·실을 심도있게 검토
- ③ (근로자추천이사제) 이해관계자간 심도있는 논의 후 도입을 적극 검토
- ④ (키코) 분쟁조정을 통해 피해구제 요청시, 상황파악·필요한 조치·재발방지책 마련

- 금융행정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외부인 출입·접촉 관리 등을 포함한 '금융위 직원 행동강령' 마련(3월)
- * 금감원도 외부전문가 권고안 등을 감안하여 마련한 인사·조직문화 혁신, 금융감독·검사제 개혁, 소비자 권익제고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

(2) 금융업권 쇠신 : 채용비리 등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하게 쇠신

□ (채용비리 근절) 금융공공기관을 포함하여 은행권 채용실태에 대한 현장점검(1월, 금감원)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추진

- 채용비리 적발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시스템 마련
 - * 적발된 채용비리 등에 대해 검찰수사 의뢰, 기관장·감사 해임건의 등 조치

□ (보수공시 강화) 보수공시 강화* 등 시장을 통한 금융권 보수 체계의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고, 금융당국도 이를 지속 점검

* 예) 금융회사 경우 고액성과급 수령자에 대한 개별보수 공시 등 보다 엄격한 보수 공시기준 마련(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CEO 승계절차 투명성 제고, 사외이사 기능 강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

- 금융회사 지배구조 실태점검(금감원, 1월~) 결과 등을 감안하여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방안' 마련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방안]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반영)

- (CEO 후보군 관리 강화) CEO 후보군 선정기준 및 평가기준을 공시하고, 후보군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주주에게 보고
- (임추위 독립성 제고)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추천위원회에 대표이사 영향력 제외
- (사외이사 역할 강화) 사외이사 선출시 분야별로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포함 되도록 하고, 외부전문가, 이해관계자가 추천한 다양한 인재를 반영하여 독립성 강화
- (소수주주의 참여 확대)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 주주제안권 행사가 가능한 소수주주 기준(현행 0.1% 이상)을 추가 완화하여 소수주주의 적극적 경영참여 유도

□ (영업관행 개선) 금융권의 부당한 금융상품 판매 및 대출*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시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

* 예) 구속성 금융상품 판매행위(소위 '꺾기'), 상환능력을 초과한 과잉대출, 불공정한 금융상품 약관, 불합리한 대출 가산금리 부과 등

(3) 금융분야 경제민주주의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불공정 금융행위 근절) 주가조작 근절, 회계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국내 금융시장의 신뢰를 제고

- 자본시장조사단(금융위)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도 강화*

* 예)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신설(법무부 협의), 손해배상시효 확대(3년 → 5년)

□ (금융그룹 통합감독) 금융그룹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

* 경제민주주의 과제인 금융그룹 통합감독 등을 전담하는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 출범('17.12월, 금융위내)

-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법제화 추진('18년중)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2월 발표)

- (감독대상)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금융지주·동종금융그룹은 제외)
- (통합위험관리체계 운영) 그룹내 대표회사를 지정하고, 대표회사는 통합 위험관리를 위해 위험관리기구 (주요 금융계열사 참여) 설치·운영
- (통합 자본적정성) 금융부문 전체의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을 업권별 자본규제 최소기준(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
 - * 금융계열사간 출자액을 차감하여 외부자금 수혈 없는 가공자본은 제외
- (내부거래·위험편중 관리) 금융계열사별 위험관리체제로 관리·대응하기 어려운 위험편중·내부거래 등 그룹차원의 통합위험을 주기적으로 평가·관리

□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기관투자자·소액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활성화하고, 기업지배구조 평가 및 공시의 실효성을 제고

-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확대* 추진

* ①법적 불확실성 해소(연기금의 주식 대량보유 목적 공시 의무(소위 5% rule) 완화 등), ②인센티브 제공(정책금융기관 등의 위탁운용사 선정시 가점 부여 등), ③연기금의 선도적 참여 유도(투자일임 시 의결권 위탁 허용 등) 등 3가지 방향으로 지원

- 새도우보팅 폐지, 주주총회 활성화 등 주주권 행사 여건 개선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대형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 추진('18년중 거래소 규정 개정)

* 감사위원회 운영, 위험 관리 등 핵심적인 기업 지배구조요소에 대한 합리적 평가기준 마련 및 모범사례 제공도 확대(기업지배구조원)

2. 생산적 금융 → 혁신성장 지원

◆ 가계대출·부동산 등이 아닌 창업·벤처기업 등 보다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금융시스템 개편

-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금융역할 강화, 자금중개 기능 확대 등 금융부문이 혁신성장을 적극 견인

(1)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 기업 성장단계별 금융의 역할 강화

- (창업) 민간 주도의 자생적인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고, 창업 보육시스템을 조성하는 등 창업·벤처 생태계 육성

- (성장)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충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성('18년 약 2.7조원, '18~'20년 10조원)

* 창업 초기기업 투자펀드, 성장(Scale-up) 지원펀드 등 조성

- 혁신성장펀드와 연계한 20조원 규모 대출프로그램도 마련·지원

[혁신모험펀드 중 성장지원펀드 조성·운영계획] (1월말~2월초 발표/ 관계부처 합동)

- (출자재원) 재정, 산은, 성장금융 출자를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유치·조성
- (투자대상) 혁신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한 M&A, 사업재편 등을 집중 지원하되, 펀드간 중복을 최소화하고 향후 연계투자를 강화
- (운영체계) 민간전문가의 펀드운영위원회, 운용사 선정위원회 참여 등 민간 자율과 창의성을 적극 활용하는 운용체계구축
- (운영방향) 펀드 규모, 투자전략 등을 기준으로 리그별로 운용사를 선정하고 초과수익 이전, 후순위 출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민간자금 참여를 유도

- (회수) 코스닥 중심의 자본시장 혁신을 통해 벤처·혁신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및 회수를 적극 뒷받침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 (1.11일 발표)

- (자율·독립성 제고) 코스닥위원장 분리선출 및 코스닥위원회가 코스닥 상장·폐지업무를 심의·의결토록 권한 강화, 코스닥 중심의 경영평가 실시 등
- (세제지원 확대) 소득공제 혜택(투자금 10%)을 부여하는 코스닥 벤처펀드 활성화, 연기금의 코스닥 차익거래 시 증권거래세(現 0.3%) 면제 등
- (금융지원 확대) 신규 벤치마크 지수 개발 등을 통한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투자비중 확대 유도, 총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Scale-up 펀드」 조성·운영
- (상장요건 개편) 이익미실현 기업 상장요건 확대 등 진입규제 재정비
- (신뢰성 강화) 상장유지 여부 심사 강화 등을 통해 부실기업을 조기 퇴출

- (재기) 공공기관 연대보증 전면 폐지*(3월~) 등 창업자의 재기·재도전 지원 강화를 위한 혁신안전망 확충

* (현행) 창업 7년 이내 기업 폐지 → (개선) 7년 초과 기업까지 전면 폐지
 ※ 연대보증 폐지시 예상되는 창업·중기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위축, 은행 부실률 확대 우려 등에 대한 보완방안도 같이 마련

[2] 금융 본연의 기능 강화 :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중개 확대

- (자본규제 개편) 과도한 가계·부동산 대출 취급유인을 억제하고, 기업금융 활성화 유도할 수 있도록 BIS규제·예대율 등 개편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 (1.19일 발표)

- (주담대 리스크관리 강화) LTV가 높은 주담대에 대한 추가 자본규제 등 가계 신용 리스크관리 강화를 통해 과도한 가계대출 취급유인 억제
- (은행 예대율 산정방식 개편) 예대율(대출금/예수금) 산정시, 가계-기업대출 간 가중치를 차등화하여 기업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 (거시건전성 규제 도입) 경제 전체적으로 급속한 가계부문 신용팽창시 추가 자본을 적립토록 하는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 (정책금융 역할 강화) 정책금융을 벤처·신산업 육성 등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능 개편

* 관련 부처·공공기관 등 협의를 거쳐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방안' 마련(4분기)

-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강화

* 정책금융(산은·기은·수은·신보, 조원): ('17) 117.5 → ('18) 122.1 → ('21) 130.0

** 소상공인 상생대출 : 소상공인에 대해 금리인하(△1.3%p), 보증료 우대(△1%p) 등 혜택 제공(기은, '18.1월부터 1.2조원 공급계획)

- (동산담보·기술금융) 담보가 없어도 기술력·매출전망 등 미래 가치에 따라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금융시스템을 대폭 개편

[동산담보 활성화 방향] (2월 발표)

- (시장조성) 동산담보 이용업종과 제품을 확대하고 동산담보를 일반담보화하는 한편, '특례보증(신보)' '특별매입자금(기은)' 등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

* ① 이용가능기업(제조업→여타업종 확대), ② 담보물 범위(원재료→완제품 확대)
 ③ 동산담보 취득 가능 대출상품(동산담보대출 → 시설자금, 구매자금 확대)

- (인프라 조성) 은행의 적극적 취급 유도를 위해 평가·사후관리·매각 인프라를 조성

* ① 외부기관에 의한 동산평가 심층정보 제공, ② IoT 사후관리기반 마련

- (법령·제도개선) 범부처 TF를 구성하여 「동산담보법」 등 관련 제도개선 추진

[기술금융 시스템 개편방향] (6월 발표)

- (평가모형 개편) 기업 미래가치·성장성 등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지적재산권 평가를 내실화(특허권 개수→가치)하고 매출·영업전망 평가를 강화

- (기술·신용평가 일원화) 은행 신용평가-기술평가 모형의 차질 없는 일원화 추진을 위해 여신데이터 축적, 모형 개량 등 '일원화 가이드라인' 제정

- (활용도제고) 기술금융 이용기업에 대한 금융혜택을 대폭 강화하고 기술금융이 금융 외에도 세제혜택 및 다양한 정부사업 평가 등에 활용되도록 개편

- (전문성제고) 전공과 경력을 감안하여 전문적 기술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술금융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은행중심의 전문인력 육성 추진

- (구조조정 체계 개선) 1조원 규모 '기업구조혁신펀드'('17.12월)를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고 산업 생태계 활력을 제고

* 은행권·캠코·성장금융이 0.5조원 출자, 민간자금 매칭으로 1조원 조성(향후 증액 검토)

3. 포용적 금융 → 서민·소비자 보호강화

- ◆ 서민층·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별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세심하게 마련
-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함께, 사회적금융 활성화 등 금융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노력을 강화

(1) 서민취약차주 지원 : 서민의 자금애로 해소 및 금융부담 완화

- (서민금융 강화) 정책서민금융(연간 7조원 수준), 사잇돌대출(20년까지 3조원 검토)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 '중금리대출 시장 활성화방안' 추가 마련(1월)
 -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재원확충 방안** 마련 등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방안' 마련(하반기)
- (금융이용부담 경감) 법상 최고금리 인하, 소매 자영업자 대상 카드수수료 경감 등 국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적극 완화
 - 법상 최고금리를 **24%로 인하**(2.8일)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1.11일 발표)도 차질없이 추진
 - * 고금리대출을 대환하는 가칭 '안전망 대출'을 3년간 1조원 공급 등
 - **소매 자영업자**(편의점·슈퍼·제과점 등 소액결제업종)의 수수료부담 경감을 위한 **카드수수료 경감방안** 마련(1월 마련, '18.7월 시행)
 - ※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상반기)을 거쳐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조정 등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마련(11월 마련, '19.1월 시행)
 - 최근 시장금리 상승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 체계 합리성 점검 강화(연중, 금감원)
- (재산형성 지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혜택 확대*, 공모펀드 신뢰성 제고 등 국민의 재산형성을 적극 지원
 - * 비과세한도 확대(250→400만원) 효과를 보아가며, **세제혜택 일몰('18말) 연장** 추진

- (연체부담 완화)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300만건)과 함께, 상환능력이 사실상 없는 장기소액연체자의 제기*도 적극 지원
 - * 상환능력 없는 장기소액연체자(약 159만명)도 적극적인 채무조정 추진 → '장기소액연체자 제기를 지원하는 신규기구' 설립(2월)
- 연체가산금리 체계 개편, 연체시 담보권 실행유예 등 '취약차주의 연체부담 완화방안'도 마련(1.18일)

(2)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소비자 중심으로 금융제도 정비

- (제도 정비) 금융상품 사전정보 제공강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원칙 도입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
- (소비자 중심 금융혁신) 일상 생활속에서 국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을 지속 추진
 - *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7.4조원) 등 국민체감도가 큰 과제 추진중

[금융소비자 중심 금융혁신 추가 과제(안)] (1분기중 과제별 발표)

-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 신용대출·카드사용 등 금융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CB사 신용등급의 정확성·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리도 강화
 - * 예) 통신료 납부실적 등 비금융신용정보의 활용을 확대하여 청년층 등 금융정보 부족자(Thin Filer)의 평가상 불이익을 완화
- (청년병사 재산형성 지원) 향후 단계적인 병사급여 인상에 맞추어, 전역시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개편* 및 체계적인 홍보·안내 등 추진
 - * 예) 은행권 군인적금 月적립액 상향, 각종 수수료 등 금융부담 경감 등
- (은행수수료 부과체계 개선) 국민생활과 밀접한 ATM·외화환전 수수료 등을 중심으로 부과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투명성·공정성 제고방안 마련
 - * 예) 저소득층 대상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유도 등

(3) 사회적금융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 (사회적 금융)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에 대한 체계적 금융 지원을 위해 「사회적금융 활성화방안」 마련(2월)
 - *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확대, 사회투자펀드 조성, 신탁 역할강화 등

4. 경쟁촉진 → 국민 금융편익 제고

- ◆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1분기) 등을 통해 새로운 도전자 출현을 유도하고, 금융산업내 건전한 경쟁과 혁신을 촉진
- ◆ 핀테크 활성화, 금융규제 혁신 등을 통해 새로운 혁신 금융 서비스가 활발히 출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1) 인가 개편 : 금융분야내 새로운 혁신 도전자 출현 촉진

- (은행) 영업대상 등에 따라 인가단위를 세분화*하여 다양한 형태의 은행 신설을 유도
 - * 예) 영업대상에 따라 전체고객/소비자 등으로 인가단위를 세분화
- (보험)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회사* 설립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
 - * 예) 온라인 보험사, 질병·간병보험 전문 보험회사 등
- (금융투자) 능력 있는 금융인이 투자자문사를 설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단계적 성장*할 수 있는 금융창업 성장사다리 강화
 - * 예) 자문사 → 일임사 → 사모자산운용사 → 자산운용사
- 자본금요건 완화, 등록제 전환 등 금융투자업 분야의 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
- PEF가 M&A, 기업구조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험 감수자 (risk taker)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립절차 등 개선
- (신탁) 금전의 비금전 신탁(유언대용신탁, Pet신탁, 동산관리신탁 등)과 같은 다양한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 신탁업자 설립 허용

(2) 핀테크 활성화 :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시 유도

- (혁신 금융서비스 촉진) 모바일결제, 자율주행기술 관련 보험 상품 도입, 블록체인* 기술확산 등 '핀테크 로드맵' 마련(2월)
 -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한 번의 본인인증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 인증없이 금융거래 가능('17.10월 금투 → '18년중 은행·보험)
- 소비자의 본인정보 활용권*을 보장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 ('18년 시행하는 EU사례 등 참조하여 방안 마련)
 - * 고객이 동의시 제3자가 금융회사의 고객 계좌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
- 금융위원회내 핀테크 등 금융 혁신을 지원하는 전담조직 설치 추진
- (규제 샌드박스) 금융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시행('17.4월~) 중인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지속 활성화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혁신성·소비자 편익이 큰 서비스에 대해 시범인가·일부 규제를 면제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 (빅데이터 활성화) 빅데이터 활용 및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방안' 마련(2월)
- 비식별정보 분석·이용의 법적근거를 명확화하고,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리보장 등을 통해 정보 보호와 활용 간 균형 도모
- 금융권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신용정보원) 등 공공부문의 빅데이터 관련 인프라 확충*
 - * 신용정보원 등에 집중된 정보를 활용한 표본DB 구축, 비식별정보 거래를 위한 중개플랫폼 구축(예: 금융보안원) 등

(3) 금융규제 혁신 :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및 외연 확대 지원

□ (불합리한 규제역파) 그간 추진해 온 금융규제 개혁기조*를 보다 강화하여 불합리한 금융규제를 지속 개선

- * ① '14년 이후 법령규제 개선, 그림자규제 정비, 자율규제 합리화 등 추진
- ② 금융분야에서 선도적으로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 활성화('15년~)
- ③ 금융규제 감독의 원칙·절차를 담은 「금융규제 운영규정」 시행('16.1월)

○ 시장·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쟁을 저해하거나 금융혁신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영업규제 등을 과감하게 개선*

- * ① 기업금융 역할 강화 등을 위해 PEF 운용규제를 개선
(예: CB·BW와 유사한 전환우선주 등에 대해서도 투자 허용 등)
- ② 지역 서민금융 공급 강화를 위한 저축은행 규제 개선
(예: 지점설치 관련 증자요건 완화 등)

○ 비조치의견서 회신기한 단축(45→30일, 2분기), 행정지도 관리 강화*, 음부즈만** 운영 활성화 등 관련 인프라도 지속 정비

- * 예) 행정지도 운영 평가 내실화, 금융위 사후보고절차 강화 등
- ** 금융규제 개선 관련 과제 발굴 및 금융당국 이행 여부 모니터링 등

Ⅲ. 향후계획

◆ 법 개정없이 추진가능한 주요 과제들은 1분기내 방안을 확정하고 최대한 조속히 성과를 시현

◆ 국민들이 금융혁신의 성과를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 관련 '점검-평가-환류' 추진체계를 구축·운영

□ (추진일정) 법 개정없이 추진가능한 과제는 1분기내 방안을 확정·추진하여, 금융혁신의 가시적 성과를 조속히 달성

※ [참고] 금융혁신 세부과제별 추진일정(안)

○ 법 개정 필요과제*는 최대한 신속히 입법을 추진하고, 국회 설명 강화 등 법 통과에 노력

* 예)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등

□ (추진체계) 체계적인 '점검-평가-환류체계' 운영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 추진

○ (점검) 금융혁신 과제의 이행실적 등 추진현황을 금융발전 심의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평가

*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구성된 금융부문 최고 심의기구(→ 금융행정혁신위에 참여했던 위원들 대부분이 금발심에 포함)

- 금융위원장 정례브리핑, 현장방문 등을 개최하여 금융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등을 정례적으로 대외 공개

○ (평가) 정책 수요자별 현장간담회(예: 중소기업인, 소비자, 핀테크 종사자 등)를 통해 금융혁신 체감도 등을 지속 평가

- 하반기 분야별로 '금융혁신 국민체감도 평가' 실시
(예: 혁신성장 지원, 서민금융, 핀테크 활성화 등)

○ (환류) 금발심 회의, 소비자중심 현장점검(사무처장 단장, 금융위·금감원·협회 등) 등을 통해 기존과제 보완·신규과제 발굴 등 지속

[참고] 금융혁신 주요과제별 추진일정(안)

◆ 금융혁신 주요과제의 추진방안은 최대한 1~2월중 확정

⇒ 이후에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금융혁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이행, 성과점검·평가 등에 정책역량을 집중

시기	분야	주요 발표과제
1월	생산적금융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방안
		코스닥시장 활성화방안
	포용적금융	금융업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
		최고금리 인하 관련 보완방안
		중금리대출시장 활성화방안
경쟁촉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경감방안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	
2월	금융쇄신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추진방안
		금융그룹통합감독 방안
	생산적금융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동산담보 활성화 방안
	포용적금융	혁신모험펀드 조성방안
		장기소액연체자 재기 지원을 위한 신규기구 설립
		국군병사 목돈마련 지원방안
경쟁촉진	사회적금융 활성화방안	
	핀테크 활성화 로드맵	
3월	금융쇄신	빅데이터 활성화방안
		금융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직원 행동강령
	포용적금융	회계개혁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시행령 입법예고)
2분기	생산적금융	은행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하반기	생산적금융	기술금융 활성화방안
		창업보육시스템 조성방안
	포용적금융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상시	포용적금융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방안
		ISA 혜택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카드수수료율 조정방안(3년주기 재산정)
		생활밀착형 소비자 중심 금융혁신 과제 추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일부과제의 경우 발표시기는 조정 가능